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민간참여형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2-258호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11.07.]

■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민간참여형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중 아래의 내용을 정정 공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정정사유
<p>26페이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하단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관련 일체</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제상 시 제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p>해당 내용 삭제</p>	<p>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3세대 구성 및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통해 판단하며, 해외체류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p>
<p>6페이지 예비입주자 선정시 순번선정 기준 내용 중 지역우선공급 미표기</p> <p>■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p>6페이지 예비입주자 선정시 순번선정 기준 내용 중 지역우선공급 표기</p> <p>■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p>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과(<http://www.트리플시티엘리프.com>)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사전 인원내 따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트리플시티엘리프.com>)에서 사전방문접수한 고객에 한하여 방문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날짜 및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쓸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 공급대상 : 총 936세대 [전용면적 84㎡A 216세대, 전용면적 84㎡B 258세대, 전용면적 119㎡A 145세대, 전용면적 119㎡B 139세대, 전용면적 119㎡C 80세대, 전용면적 119㎡D 80세대, 전용면적 122㎡ 18세대]

■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견본주택(☎042-546-5567)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입니다.

- 청약신청 시 ①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②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며,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 주관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대전도시공사
- 시공업체 : 계룡건설컨소시엄 (계룡건설산업(주), 파인건설(주), 대국종합건설(주), 신도종합건설(주), (주)동방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비에스건설(주), 선우건설(주))
- 분양주체 : 계룡건설산업(주)

주요 공통 사항

-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조건이 상이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0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청약 전 유의사항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시는 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및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주택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하며,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당첨제한 사항은 청약시점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기준 1년 →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손녀를 포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1순위(해당/기타)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자산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요건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 1순위 입주자저축 자격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입주자저축 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선정 = 부적격, 예비 무효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 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 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 공급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사항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거주무기기간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 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해당/기타)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계약체결
----	------------------------	--------------	-------	-------	--------------------	------

일정	2022.11.17.(목)	2022.11.18.(금)	2022.11.21.(월)	2022.11.25.(금)	2022.11.26.(토) ~2022.12.05.(월)	2022.12.26.(월) ~2022.12.31.(토)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건본주택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2BL)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15개동 총 936세대 중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초과) 462세대 : 119A 145세대, 119B 139세대, 119C 80세대, 119D 80세대, 122㎡ 18세대 [특별공급 60세대(다자녀가구 47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포함) 일반공급 4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2000786	01	119.9741A	119A	119.9741	34.6386	154.6127	93.6681	248.2808	79.6459	145	15	4	19	126	11
		02	119.9932B	119B	119.9932	34.4608	154.4540	93.6829	248.1369	79.6586	139	14	4	18	121	8
		03	119.9982C	119C	119.9982	34.0070	154.0052	93.6869	247.6921	79.6619	80	8	2	10	70	4
		04	119.9730D	119D	119.9730	34.6955	154.6685	93.6672	248.3357	79.6451	80	8	2	10	70	4
		05	122.6152	122	122.6152	35.2267	157.8419	95.7303	253.5722	81.3992	18	2	1	3	15	-
합 계											462	47	13	60	402	27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119.9741A	119.9932B	119.9982C	119.9730D	122.6152
약식표기	119A	119B	119C	119D	12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119A	119B	119C	119D	122	합계
다자녀가구	15	14	8	8	2	47
노부모부양	4	4	2	2	1	13
합계	19	18	10	10	3	60

4.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balcony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23.05.22	2023.10.20	2024.03.20	2024.08.20	2025.01.20	2025.06.20	입주시(30%)		
119.9741A	145	201동 2,3호라인 202동 2호라인 204동 1호라인 205동 2호라인 211동 1,2호라인 213동 전체 215동 3,4호라인	1층	11	191,200,000	377,000,000	37,700,000	605,90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60,590,000	181,770,000	
			2층	11	195,500,000	385,000,000	38,50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3층	11	199,900,000	393,000,000	39,300,000	632,20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63,220,000	189,660,000
			4층~9층	54	203,200,000	402,000,000	40,200,000	645,40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64,540,000	193,620,000
			10층 이상	58	207,500,000	410,000,000	41,000,000	658,50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65,850,000	197,550,000
119.9932B	139	201동 1호라인 202동 1호라인 204동 1호라인 205동 1호라인 207동 3호라인 210동 3호라인 212동 3호라인 214동 3호라인	1층	8	190,500,000	377,000,000	37,700,000	605,20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60,520,000	181,560,000	
			2층	8	194,900,000	385,000,000	38,500,000	618,40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185,520,000
			3층	8	199,200,000	393,000,000	39,300,000	631,50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63,150,000	189,450,000
			4층~9층	48	203,600,000	401,000,000	40,100,000	644,70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193,410,000
			10층 이상	67	208,000,000	409,000,000	40,900,000	657,90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65,790,000	197,370,000
119.9982C	80	207동 2호라인 210동 2호라인 212동 2호라인 214동 2호라인	1층	4	189,900,000	376,000,000	37,600,000	603,50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60,350,000	181,050,000	
			2층	4	194,200,000	384,000,000	38,400,000	616,60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184,980,000

			3층	4	198,500,000	392,000,000	39,200,000	629,70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188,910,000
			4층~9층	24	202,800,000	400,000,000	40,000,000	642,80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192,840,000
			10층 이상	44	207,100,000	408,000,000	40,800,000	655,900,000	65,590,000	65,590,000	65,590,000	65,590,000	65,590,000	65,590,000	65,590,000	196,770,000
119.9730D	80	207동 1호라인 210동 1호라인 212동 1호라인 214동 1호라인	1층	4	191,400,000	377,000,000	37,700,000	606,10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60,610,000	181,830,000
			2층	4	195,700,000	385,000,000	38,500,000	619,200,000	61,920,000	61,920,000	61,920,000	61,920,000	61,920,000	61,920,000	61,920,000	185,760,000
			3층	4	199,000,000	394,000,000	39,400,000	632,400,000	63,240,000	63,240,000	63,240,000	63,240,000	63,240,000	63,240,000	63,240,000	189,720,000
			4층~9층	24	203,400,000	402,000,000	40,200,000	645,60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193,680,000
			10층 이상	44	207,800,000	410,000,000	41,000,000	658,800,000	65,880,000	65,880,000	65,880,000	65,880,000	65,880,000	65,880,000	65,880,000	197,640,000
122.6152	18	211동 1,2호라인 215동 3,4호라인	4층~9층	12	205,700,000	406,000,000	40,600,000	652,30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65,230,000	195,690,000
			10층 이상	6	210,200,000	414,000,000	41,400,000	665,60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66,560,000	199,680,000

■ 공통사항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및 분양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해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기본선택품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이하 마이너스옵션이라 함) 제도가 적용된 주택으로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적 품목 선택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일괄 선택	문	침실, 욕실	문틀상부마감선, 문선, 문틀 및 문짝(부속철물 포함)	세대현관문·방화문·주방발코니 문틀 및 문짝, 현관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철, 목재문틀(가틀), PL창호, 실외기실 그릴창
	바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바닥재(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마루귀틀·디딤판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 에어컨냉매배관
	벽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초배지, 벽체마감(벽지 및 타일), 각종 가구류, 발코니벽 도장	석고보드, 발코니난간,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해당부위), 경량벽체, 단열재
	천장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천장지, 반자돌림, 발코니천장 도장, 몰딩	천장틀 위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욕실	욕실 1·2	바닥 및 벽마감, 천장재(천장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데, 욕실장, 위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욕조,샤워기, 수전류 등), 액세서리류, 조명 기구, 욕실폰, 콘센트, 각종기기류	조적·방수공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	주방기구 및 수납장, 액세서리류, 주방기기류, 벽체마감(타일 등), 싱크 수전 레인지후드, 주방TV, 쿡탑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조명 기구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현관, 발코니, 팬트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매입박스, 매입형 조명기구

(단위 : 원)

구분	119A	119B	119C	119D	122
마이너스옵션 금액	44,319,000	44,517,000	44,630,000	44,822,000	45,245,000

■ 마이너스옵션 유의사항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실별·위치별 등 개별적인 선택이 불가하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은 상호간의 공사 추진상의 차이점(바닥마감, 벽마감,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하자처리 확인,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 후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 분쟁 예방 및 시공부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계약체결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제공한 기본제공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가능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써,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이하 유상 옵션이라 함)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공급계약 체결 시 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유상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유상옵션 선택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하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는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하기 유상 옵션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항목의 A/S기간은 제품 제조사의 보증에서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19.9741A	119A	3,436,000	343,600	3,092,400
119.9932B	119B	3,572,000	357,200	3,214,800
119.9982C	119C	3,479,000	347,900	3,131,100
119.9730D	119D	5,880,000	588,000	5,292,000
122.6152	122	4,152,000	415,200	3,736,8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급금액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개별 확장에 따른 법령 위반, 하자, 인접세대의 민원,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추가 시공되어 침실 및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 및 결로가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1, 다용도실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비확장의 경우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태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 및 금액

(단위 : 원)

타입	선택안	실내기 대수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19A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LG/삼성	5,520,000	552,000	4,968,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2,3		8,650,000	865,000	7,785,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500,000	950,000	8,550,000	주방 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520,000	952,000	8,568,000	
119B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520,000	552,000	4,968,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2,3		8,840,000	884,000	7,956,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2		9,680,000	968,000	8,712,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1		9,700,000	970,000	8,730,000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시 불가
	선택5	7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1,2		10,680,000	1,068,000	9,612,000	
119C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600,000	560,000	5,040,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2,3		8,750,000	875,000	7,875,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2		9,600,000	960,000	8,640,000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1		9,650,000	965,000	8,685,000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시 불가
	선택5	7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1,2		10,600,000	1,060,000	9,540,000	
119D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650,000	565,000	5,085,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2,3		8,700,000	870,000	7,83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500,000	950,000	8,550,000	알파룸 수납강화형 선택 시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600,000	960,000	8,640,000	
122	선택1	3대	거실, 주방, 침실1		5,650,000	565,000	5,085,000	
	선택2	5대	거실, 주방, 침실1,2,3		8,800,000	880,000	7,920,000	
	선택3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550,000	955,000	8,595,000	주방 스타일업 B 선택시
	선택4	6대	거실, 주방, 침실1,2,3, 알파룸		9,600,000	960,000	8,640,000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 시 계약금 10%,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시공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 및 일체의 계약변경(신규, 해지)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위치 등을 확인 하신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과 관계없이 각 실에 냉매매립배관(거실 : 스탠드형, 침실 1:2,3, 알파룸(119A,119D,122), 알파룸1(119B,119C) : 벽걸이) 및 콘센트가 기본으로 제공·설치됩니다.(주방에는 벽체냉매 없음) 다만,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알파룸1은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와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피난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단위 : 원)

구분	품목	제조사	내용	설치위치	대상 타입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거실 벽 스타일업		거실 : 포세린타일(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복도 : 시트판넬+도배→ 시트판넬 추가+ 세라믹타일(1200*2400)	거실	119A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6,380,000	638,000	5,742,000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	6,240,000	624,000	5,616,000
					119B	5,700,000	570,000	5,130,000	

					119C	선택1. 알파룸1 수납강화형 미선택	4,830,000	483,000	4,347,000
						선택2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	4,900,000	490,000	4,410,000
						119D	8,300,000	830,000	7,470,000
					122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6,700,000	670,000	6,030,000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	6,870,000	687,000	6,183,000
2	거실/주방 바닥 스타일업		거실+주방+복도 : 강마루 → 포세리타일	거실+주방+복도	119A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1,720,000	172,000	1,548,000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	1,780,000	178,000	1,602,000
						119B	1,520,000	152,000	1,368,000
						119C	1,620,000	162,000	1,458,000
						119D	1,800,000	180,000	1,620,000
					122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1,880,000	188,000	1,692,000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	1,950,000	195,000	1,755,000
3-1	주방 스타일업 A		주방 벽체 : 도기질타일 → 엔지니어드스톤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	119A		1,450,000	145,000	1,305,000
						119B	1,450,000	145,000	1,305,000
						119C	1,670,000	167,000	1,503,000
						119D	1,670,000	167,000	1,503,000
						122	1,450,000	145,000	1,305,000
3-2	주방 스타일업 B		디자인 상부장+아일랜드+식탁추가+팬트리추가+장식장추가+알파룸축소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미드웨이장+인덕션(쿠첸)+ 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알파룸	119A		9,870,000	987,000	8,883,000
			디자인 상부장+아일랜드+식탁 추가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미드웨이장+인덕션(쿠첸)+ 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119B		8,050,000	805,000	7,245,000
			디자인 상부장+아일랜드+식탁 추가+주방팬트리 추가+장식장추가+현관창고축소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미드웨이장+인덕션(쿠첸)+아일랜드형후 드+조명스타일업	주방 +현관창고	119C		8,750,000	875,000	7,875,000
			디자인 상부장+아일랜드+식탁 추가+장식장추가+팬트리수납추가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미드웨이장+인덕션(쿠첸) 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팬트리	119D		7,100,000	710,000	6,390,000
			디자인 상부장+아일랜드+식탁추가+팬트리추가+장식장추가+알파룸축소 주방벽엔지니어드스톤+후라이팬전용서랍+미드웨이장+인덕션(쿠첸) 아일랜드형후드+조명스타일업	주방 +알파룸	122		10,100,000	1,010,000	9,090,000
4	침실 수납강화형		침실3 붙박이장 → 침실2,3, 복도장식장	침실2 침실3,복도	119A		1,230,000	123,000	1,107,000
					122		1,230,000	123,000	1,107,000
5	알파룸1 수납강화형		알파룸1 → 복도팬트리+침실2,3 드레스룸	알파룸1	119B		2,270,000	227,000	2,043,000
			알파룸1 → 복도팬트리+침실2,3 드레스룸		119C		2,170,000	217,000	1,953,000
			알파룸 → 복도 홈오피스형 가구+침실2,3 드레스룸		119D		4,300,000	430,000	3,870,000
6	알파룸 홈오피스형		알파룸+목창호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홈오피스형가구	알파룸	119A		3,450,000	345,000	3,105,000
					122		3,450,000	345,000	3,105,000
	알파룸2 홈오피스형		알파룸2 → 슬라이딩도어+홈오피스형가구	알파룸2	119B		4,540,000	454,000	4,086,000
			알파룸2+목창호 → 슬라이딩도어+홈오피스형가구		119C		3,520,000	352,000	3,168,000
7	조명		라인형 조명, 디밍(거실적용, 주방제외), 온오프	거실	119A		1,060,000	106,000	954,000

	스타일업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	119B		1,350,000	135,000	1,215,000	
					119C		960,000	96,000	864,000	
					119D		1,360,000	136,000	1,224,000	
					122		1,320,000	132,000	1,188,000	
8	드레스룸 스타일업		포스트형 드레스룸 가구+가구문짝 → 벽판넬 드레스룸 가구 + 제습기 + 슬라이딩도어	드레스룸	119A		5,600,000	560,000	5,040,000	
					119B		4,950,000	495,000	4,455,000	
					119C		4,250,000	425,000	3,825,000	
					119D		5,650,000	565,000	5,085,000	
					122		5,600,000	560,000	5,040,000	
9	다용도실 스타일업		3단 세탁선반, 손빨래수전 → 다용도실 트윈세탁기장 + 손빨래볼	다용도실	119A		1,930,000	193,000	1,737,000	
					119B		1,980,000	198,000	1,782,000	
					119C		1,840,000	184,000	1,656,000	
					119D		1,830,000	183,000	1,647,000	
					122		1,930,000	193,000	1,737,000	
10	의류관리기	LG전자	모델명 : S5GBP	드레스룸	전타입		2,100,000	210,000	1,890,000	
11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및 수납가구	LG전자	냉장 : BCS41AA1(클레이브라운/클레이브라운) 김치 : BC3K11A(클레이브라운/클레이브라운)	주방	119A		6,580,000	658,000	5,922,000	
					119B		6,360,000	636,000	5,724,000	
					119C		6,580,000	658,000	5,922,000	
					119D		5,900,000	590,000	5,310,000	
					122		6,580,000	658,000	5,922,000	
12-1	인덕션	쿠첸	모델명 : CEN-IF3A0NBA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주방	전타입		500,000	50,000	450,000	
12-2	하이브리드	헬러	모델명 : TH-3210D * 3-2 주방스타일업B 선택시 선택불가				2,730,000	273,000	2,457,000	
13	식기세척기	LG전자	모델명 : DUBJ2GA(솔리드 그린)	주방	전타입		1,690,000	169,000	1,521,000	
14	스마트 복합환풍기	힘펠	모델명 : FHD-P150S1	공용욕실	전타입		430,000	43,000	387,000	
				부부욕실	전타입		530,000	53,000	477,000	
15	안전방충망	원가드	안전망 상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전실	119B	선택1. 알파룸1 특화형 미선택	1,680,000	168,000	1,512,000	
			안전망 상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선택2. 알파룸1 특화형 선택	1,500,000	150,000	1,350,000	
			안전망 상호 전체(알파룸1, 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119C	선택1. 알파룸1 특화형 미선택	1,680,000	168,000	1,512,000	
			안전망 상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선택2. 알파룸1 특화형 선택	1,500,000	150,000	1,350,000	
			안전망 상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119D	선택1. 알파룸1 특화형 미선택	1,860,000	186,000	1,674,000	
			안전망 상호 전체(알파룸1, 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선택2. 알파룸1 특화형 선택	1,680,000	168,000	1,512,000	
			안전망 상호 전체(안방분합창, 실외기 그릴창 제외)			122		1,680,000	168,000	1,512,000
16	열차단필름	후퍼 옵틱	거실, 침실2, 침실3		부분			2,390,000	239,000	2,151,000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알파룸	전실	119A		4,220,000	422,000	3,798,000	
			거실, 침실2, 침실3, 알파룸1	부분			2,390,000	239,000	2,151,000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알파룸1	전실	119B		4,220,000	422,000	3,798,000	
			거실, 침실2, 침실3, 알파룸1	부분			2,390,000	239,000	2,151,000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알파룸1	전실	119C		4,220,000	422,000	3,798,000	
			거실1,2, 침실2, 침실3, 알파룸	부분			2,390,000	239,000	2,151,000	
			거실1,2,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1,2, 다용도실, 알파룸	전실	119D		4,220,000	422,000	3,798,000	
			거실, 침실2, 침실3	부분			2,390,000	239,000	2,151,000	
			거실, 침실1(발코니 만), 침실2, 침실3,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 알파룸	전실	122		4,220,000	422,000	3,798,000	
17	무기질	SEF	침실1, 침실2, 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전실	119A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시	4,200,000	420,000	3,780,000	

도로시공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119B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시	3,900,000	390,000	3,51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1,2		선택1. 알파룸1 수납강화형 미선택시	4,700,000	470,000	4,23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침실2&3드레스룸(복도팬트리제외),알파룸2		선택2.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시	4,800,000	480,000	4,32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1,2		선택1. 알파룸1 수납강화형 미선택시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침실2&3드레스룸(복도팬트리제외),알파룸2		선택2.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시	4,300,000	430,000	3,87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선택1. 알파룸1 수납강화형 미선택시	3,950,000	395,000	3,555,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침실2&3드레스룸(복도팬트리제외),알파룸		선택2. 알파룸1 수납강화형 선택시	4,350,000	435,000	3,915,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122	선택1.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시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1,침실2,침실3, 파우더룸, 드레스룸, 알파룸			선택2. 주방 스타일업 B 선택시	3,900,000	390,000	3,510,000

■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거실/주방 바닥스타일업의 포세린타일은 84타입과 상이하며 시공위치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고,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세라믹 타일 시공은 타입별로 시공위치가 상이하며, 미선택시 거실과 동일한 실크벽지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시공위치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고,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복합환풍기 선택 시 환기, 온풍, 제습 등의 기능이 있는 스마트복합환풍기가 공용욕실,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미선택시 일반 환풍기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타입별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스타일업 A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스타일업 A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현장 시공 시 이음부위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기존 방충망이 제거되고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 주방스타일업 B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시공은 타입별로 디자인이 상이하며, 상부장이 천장과 이격시공되므로 각종 배관 배선등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기질 도로 시공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 침실 및 드레스룸에 시공하며, 최종 마감재 시공 전 무기질도포가 시행되므로 육안상 확인 어렵습니다. 이는 최종 마감재 등을 철거 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열차단필름은 전실 선택시 외창 기준으로 시공되며, 침실1(안방) 분합창은 미시공되며, 부분옵션 선택시 거실 외창, 침실2, 침실3 외창에 시공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는 각 타입별 지정된 색상만 선택가능 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마감두께, 벽체,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폭,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 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시기	금 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유상 옵션납부계좌는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좌 입금(예시 : 2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2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금회 공급하는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은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의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임.**

■ **민영주택(전용 85㎡초과 주택) 중복청약** : 동일세대 내 각기 다른 청약통장으로 **전용 85㎡초과 주택만을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가능하나 미계약한 통장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 및 동일세대 내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에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중복청약

- 공급주택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6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세대 내 중복 당첨 처리 예시

- A : 공공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 A의 세대원 :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
- ①A는 당첨으로 재당첨제한을 받긴 하나, A의 세대원이 민영주택의 당첨자이기 때문에 A의 세대원은 정당한 처리
- ②A의 세대원이 재당첨제한을 받는 민영주택에 당첨됐기 때문에 A는 재당첨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1.11.07.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시는 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및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7.)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100%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1.11.07.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2021.11.07.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분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21.11.08.이후) 거주자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청약자격 요건</p>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 예치기준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459 2123 662"> <thead> <tr> <th>구 분</th> <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특별공급 각 유형(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제28조에 따라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

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자격 검증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5.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p>※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6.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공급 유형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p>※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1.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나의청약 제한사항→ 공동인증서 로그인→조회기준일 입력→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11.25)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 제64조 제5항 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2022.11.17.(목) (09: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10:00 ~ 14:00)
일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해당/기타) • 2순위 	2022.11.18.(금) (09:00 ~ 17:30) 2022.11.21.(월)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접수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 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3.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청약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아파트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선정 및 발표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25.(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해당/기타)	
	2순위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25.(금) ~ 2022.12.04.(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2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1.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예정	2022.11.26.(토) ~ 2022.12.05.(월) 10일간 (10:00 ~17:00)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 장소 : 트리폴시티 엘리프 건분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홈페이지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분주택을 방문, 청약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당첨포기로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분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85㎡ 초과 민영주택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표1>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 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초과하여 해 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 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 구비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12.26.(월) ~ 2022.12.31.(토) / 6일간 (10:00 ~ 17:00)	건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하나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추후 안내예정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자명 예시 : 2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2011001홍길동' / 2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2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이체 확인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3.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입금 확인증 및 이체 확인증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부적격 당첨 및 대출 관련 사항

■ 부적격 및 서류제출 관련 세부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6억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및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따라서 계약자는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에서 대납해주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익제시 및 보상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8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일반사항

- 본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2년 11월 02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 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 (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 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119B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2회 (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낮높이조절 세면기, 미끄럼 뺀지 타일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당첨자(예비) 계약체결 기간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도안 갑천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차량·기타 외 부인의 통행 등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갑천호수공원 및 공원 주차장이 단지 남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 및 주차장에서 소음, 차량 매연,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유치원용지, 연립주택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도안 갑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안 갑천지구 내 및 지구 인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편의시설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안 갑천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사업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는 기존학교 과밀로 신설 예정이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지하수위 조절을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일정의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펜스 또는 조경(울타리 등)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사인물,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망 침해 및 조명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미관 지장,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고층 빛 반사가 발생 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타 설비와의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재배치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 발코니 외부에는 몰딩 등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포함,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진입됨.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사용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등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조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여건을 확인 하신 후 청약에 임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각각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대지 일부(주출입구 및 차로 등)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창호가 입면분할방식으로 시공되어(발코니 확장 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사 및 비상차량의 단지 내 이동시에는 보도를 혼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에 펌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설비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세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동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산책로, 부대복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조경등, 출차주의등, CCTV 등에 의한 소음 및 조명 빛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어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CCTV는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지하주차장, 주민복지시설, 옥외 등의 주요 위치에 설치되며,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 등에는 무선AP가 주요위치에 설치되며, 공용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본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는 1,876대(장애인주차 58대 포함)이며 1세대 당 약 2.0대임.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 커뮤니티 시설 인근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특성상 지하주차장,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설비와 설비운영을 위한 배선, 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시설(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소음 및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동 지하PIT에는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유지관리 상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A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냄새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진출입시 진입구간의 교차로의 특성상 통행 시 병목현상 등에 따른 지체현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 승하차시 회차를 해야함.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2개소로 진출입시 진입구간의 교차로의 특성상 통행 시 병목현상 등에 따른 지체현상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친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일부 상가주차를 제외한 단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지상은 비상차량을 위한 동선만 계획되어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5동·206동·207동·208동·214동·215동은 인근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접하고 있어 차량전조등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201동·202동·203동·204동·206동·212동·214동·215동은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11동과 213동 사이 지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가 단지 내에 설치됨.
- 세대 전기용 세대분전함은 침실 또는 알파룸에 설치되고, 통신용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내부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통신·소방 기구류의 마감재에 대한 제품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201동 지붕에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의거하여 202동·204동·207동·212동·214동 지붕, 지하1층 202동 통신실, 203동 통신실, 204동 통신실, 207동 통신실 등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요위치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 및 안테나가 설치예정이고, 이동통신 품질 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동·204동·207동·212동·214동 지붕, 지하1층 202동 통신실, 203동 통신실, 204동 통신실, 207동 통신실 등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요위치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 및 안테나가 설치되며,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재활용창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과 수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기 바람.

- 단지 내 조경계획(수목식재, 수경시설, 운동시설, 휴게공간, 조형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과정 등에 따라 위치, 재료, 형태, 색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밴드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음.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보안등, 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비상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외벽마감재 시공상 외부창호의 크기가 조정될 수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발생 및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 동별·향별·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11동, 215동은 119A타입과 122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출발코니가 설치되어 하부세대에 음영, 상부세대에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음.
- 215동 전면, 근린생활시설2 지붕은 일부세대의 전유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사 시행중 설계 및 시공변경 관련사항

- 조감도, 전시모형 및 견본주택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자의 도산 등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시공 상의 개선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나 별도 통보없이 동급 이상의 품질과 유사색상 및 무늬를 가진 동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

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환기용급배기구, 전등, 콘센트, 통신단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주방기기, 욕실용품, 각종 기구류 등은 본 시공 시 제품사양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 유상옵션등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오·우수용 선홍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및 피난공간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거 안방 발코니에 피난공간이 설치되며, 피난공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 시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덮개가 개방될 경우 경보음(해당세대, 하부층세대, 방재실)이 울리게 됨. 피난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장애물을 적치하여 비상 시 해당 세대 및 상부층 세대의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경 단지계획은 건축구조물의 완성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설계를 재정비하므로,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조감도·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 크기 또는 장내부 깊이가 축소되거나 천장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피난공간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내부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1(주택형·유상옵션에 따라 변동)에 매립하여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으로,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119A,119D,122)·알파룸1(119B,119C)은 벽걸이형으로 설치됨.
- 월패드, 욕실폰의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KT일반전화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스피커폰 방식으로 음질성능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방TV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 네이버 CLOVA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선용 전화통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원격제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인터넷회선의 신청 및 관리비용이 발생됨.
- 원패스 시스템은 입주민의 스마트폰(핸드폰) 사양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무선AP는 통신기기의 사용위치에 따라 전파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위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 예방하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각 세대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발코니 또는 외부에 접하는 발코니 천장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천장고가 낮음
- 각 세대 주방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 주방 싱크대 인테리어 공사 시 계약자는 자동식소화기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성능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시설(유지관리) 관련사항

- 경관조명 및 각종 아파트 홍보시설물의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단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행자나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입주 시 아파트 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도시공사에서 통보하는 입주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단, 퇴거 시 환불함)
- 각 세대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아파트의 평면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형 미선택 세대는 확장형과 비교하여 공간 활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확장형 전시)과는 공간 상태와 내부 마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체결하기 바람.
- 피난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함.
- 전열교환기는 각 세대에 설치되며, 필터의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됨.
- 비난방구역의 수전류 및 배관류, 배수구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및 동파될 수 있음.
- 급수·급탕 분배기는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고,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설치가구(주방가구, 일반가구 등) 배면, 측면 및 상·하부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마루, 타일, 벽지 등)가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변형 벽체는 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메탈스터드+석고보드)로 시공되며, 경량벽체의 경우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건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건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동일 주택형이라도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건본주택,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건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건본주택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통신·소방 기구류의 마감재에 대한 제품제원,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됨. (동별 주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장고는 TBI형으로서 일반형을 설치할 경우 앞으로 돌출됨.

■ 기타 유의사항

- 각종 홍보안내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문구내용 등은 입주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 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 홈페이지,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입주일 통보시점 : 입주 30일전, 입주지정기간 : 90일 예정)
- 본 아파트의 명칭은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영문 : Gapcheon2 Treefullcity ELIF)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급함.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성능부분	성능범주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 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바이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등급	1.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6.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신청자 : 대전도시공사 3.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경량중적용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량중적용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열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연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원형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8. 열수열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r><td>20. 연제된 녹지율 조성</td><td>-</td></tr> <tr><td>21. 자연친 녹지율</td><td>-</td></tr> <tr><td>22. 생태면적률</td><td>★★</td></tr> <tr><td>23. 생활시설공간(비오토) 조성</td><td>★★★</td></tr> <tr><td>24. 신기술기 요양물전 지방용 제품의 적용</td><td>-</td></tr> <tr><td>25. 자연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td>-</td></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홈메트로 및 스마트홈</td><td>★★</td></tr> <tr><td>14. 방범안전 랜덱스</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피난거리</td><td>★★</td></tr> <tr><td>5. 목도 및 계단 유효너비</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10월 25일</p> <p>한국부동산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중적용 차단성능	★★★★	2. 중량중적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열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원형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열수열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제된 녹지율 조성	-	21. 자연친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활시설공간(비오토) 조성	★★★	24. 신기술기 요양물전 지방용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내 일조 확보율	★★	13. 홈메트로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랜덱스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목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h3>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건축주 : 대전도시공사 중공(예정)일 : 2025.10.3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99,325.5443㎡ (평가연면적: 198,659.8928㎡)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주식회사대진건축사사무소</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2-1185-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0.25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날</p> <p>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도교통보고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라. 생활 환경 등급</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d>토지이용 및 교통</td><td>31%</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td>84%</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47%</td></tr> <tr><td>물순환 관리</td><td>67%</td></tr> <tr><td>유지관리</td><td>100%</td></tr> <tr><td>생태환경</td><td>47%</td></tr> <tr><td>실내환경</td><td>53%</td></tr> </table> <p>종합등급 ★★☆☆</p> <p>2022년 10월 25일</p> <p>한국부동산원장</p> <p>*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토지이용 및 교통	31%	에너지 및 환경오염	84%	재료 및 자원	47%	물순환 관리	67%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47%	실내환경	53%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시)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갑천지구 2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건축연도 : 2025103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 660 (갑천지구 2BL)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99325.5443(㎡) 건축물의 주민 형태 : 공동주택 설계자 :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 22-주-에-1+-0052 평가자 : 여현지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문명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p> <p>인증 등급 인증등급 : 1++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th>요구량</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등급</th><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th>배출량</th></tr> <tr><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td><td>0</td><td>68.6</td><td>1++</td><td>48</td><td>16.7</td></tr> <tr><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td><td>0</td><td>84.1</td><td>1+</td><td>56</td><td>16.7</td></tr> <tr><td>에너지다소비량 건축설계</td><td>0</td><td>2.8</td><td>1</td><td>64</td><td>1.3</td></tr> <tr><td>에너지다소비량 건축실적</td><td>0</td><td>8.3</td><td>1</td><td>72</td><td>1.3</td></tr> </table> <p>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29.6</td><td>38.2</td><td>29.1</td><td>6.5</td></tr> <tr><td>급탕</td><td>30.7</td><td>37.4</td><td>27.8</td><td>6.2</td></tr> <tr><td>조명</td><td>8.3</td><td>5.7</td><td>15.7</td><td>2.7</td></tr> <tr><td>합계</td><td>68.6</td><td>84.1</td><td>80.3</td><td>16.7</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제형, 가중,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2년 10월 25일</p> <p>한국부동산원장</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68.6	1++	48	16.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0	84.1	1+	56	16.7	에너지다소비량 건축설계	0	2.8	1	64	1.3	에너지다소비량 건축실적	0	8.3	1	72	1.3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9.6	38.2	29.1	6.5	급탕	30.7	37.4	27.8	6.2	조명	8.3	5.7	15.7	2.7	합계	68.6	84.1	80.3	16.7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중적용 차단성능	★★★★																																																																																																																																																																			
2. 중량중적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열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원형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열수열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제된 녹지율 조성	-																																																																																																																																																																			
21. 자연친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활시설공간(비오토) 조성	★★★																																																																																																																																																																			
24. 신기술기 요양물전 지방용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친환경성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내 일조 확보율	★★																																																																																																																																																																			
13. 홈메트로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랜덱스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목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토지이용 및 교통	31%																																																																																																																																																																			
에너지 및 환경오염	84%																																																																																																																																																																			
재료 및 자원	47%																																																																																																																																																																			
물순환 관리	67%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47%																																																																																																																																																																			
실내환경	53%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설계	0	68.6	1++	48	16.7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적	0	84.1	1+	56	16.7																																																																																																																																																															
에너지다소비량 건축설계	0	2.8	1	64	1.3																																																																																																																																																															
에너지다소비량 건축실적	0	8.3	1	72	1.3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9.6	38.2	29.1	6.5																																																																																																																																																																
급탕	30.7	37.4	27.8	6.2																																																																																																																																																																
조명	8.3	5.7	15.7	2.7																																																																																																																																																																
합계	68.6	84.1	80.3	16.7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공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비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50,020,480	
			기간이자	1,759,456	
			필요적 경비	548,333	
			그 밖의 비용	10,066,563	
			계	162,394,832	
건축비	토목	토공사	14,463,433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739,516		
		석축공사	-		
		우수, 우수공사	2,802,044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4,410,17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20,490,507		
		부대시설공사	2,821,538		
		공통가설공사	7,321,867		
		가시설물공사	1,647,419		
		지정 및 기초공사	37,780,835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62,782,084		
		용접공사	-		
	조적공사	3,789,065			
	미장공사	3,185,010			
	단열공사	2,745,700			
	방수, 방습공사	3,294,841			
	목공사	8,054,055			
	가구공사	10,067,568			
	금속공사	7,468,306			
	지붕 및 환통공사	585,748			
	창호공사	2,313,708			
	공사비	건축			

			유리공사	332,412		
			타일공사	2,745,700		
			돌공사	2,599,261		
			도장공사	2,617,567		
			도배공사	1,665,724		
			수장공사	494,227		
			주방용구공사	13,267,222		
			그 밖의 건축공사	439,313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632,287	
				급탕설비공사	547,982	
				오수, 배수 설비공사	1,201,346	
				위생기구 설비공사	5,427,135	
				난방설비공사	6,744,402	
				가스설비공사	1,975,900	
				자동제어설비공사	289,797	
	특수설비공사	6,828,709				
	공조설비공사	-				
	전기설비공사	23,583,431				
	그 밖의 공종	정보통신공사	9,477,945			
		소방설비공사	12,883,313			
		승강기공사	3,240,473			
		일반관리비	6,121,861			
	그 밖의 공사비	이윤	3,670,649			
		계	304,550,076			
	간접비	설계비	3,471,215			
		감리비	1,982,339			
		일반분양시설경비	5,308,565			
		분담금 및 부담금	4,490,715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24			
계		15,252,85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756,180				
합계			514,953,946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택지비 가산비	12,374,353,729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참조
건축비 가산비	32,756,180,920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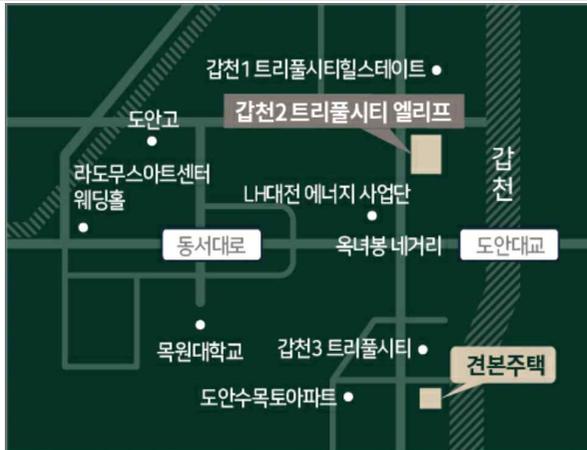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계	법정 택지이자	재산세	말뚝박기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부담금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법령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홈 네트워크	초고속 통신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 환기설비			
금액	12,374,353,729	1,759,456,629	548,333,450	5,403,160,560	3,176,670,695	1,486,732,395	32,756,180,920	2,112,063,122	9,675,068,517	3,102,896,140	5,703,046,440	5,739,087,900	4,549,906,891	918,347,430	955,764,480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구역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갑천지구 2BL	대전도시공사 (314-82-03732)	계룡건설산업 (주) (314-81-07954) 파인건설 (주) (314-81-96613) 대국종합건설 주식회사 (249-86-01011) 신도종합건설 (주) (314-81-06289) (주) 동방종합건설건축사무소 (314-81-37818)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301-81-03573) 선우건설주식회사 (305-81-86111)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10.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갑천2 트리폴시티 엘리프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도안동 방면 시내버스 114, 115, 203 / 도안동 방면 급행버스 3번
- 운영 기간 : 2022.11.07.(월) ~ 분양종료 시까지
-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되오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과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

홈페이지

<http://www.트리폴시티엘리프.com>

분양문의

■ 견본주택 : 042-546-5567

■ 운영시간 : 10:00~17:00